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공시지침

- 【공시기관】 : 대학
- 【공시시기】 : 2023년 6월
- 【공시내용】 : 2023학년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공시양식】 : 다음의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3년 3월 학기 신입생)

기준 연도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대분류)	전형명 (중분류)	전형명 (소분류)	수시			정시			추가			최종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정원내																
	정원외																
합계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최종'만 입력,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 【최종 등록인원】 : <4-나> 총 입학자, <4-다> 입학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 사이버대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으로 3학년 별도편입학자를 모집한 경우, <4-다> 입학자에 별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입력하므로 <4-가> 총 입학자, <4-나> 총 입학자, <4-자> 총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모집한 경우, <4-가>, <4-나>, <4-자> 입학자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하므로 <4-다> 입학자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작성지침

【입학전형 유형별 등록 현황】 : 전형유형별, 모집시기별(수시/ 정시“가”/ 정시“나”/ 정시“다”/ 추가)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 기입

【전형유형】 :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논술위주, 수능위주, 실기위주 등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구분

【전형명(대분류)】

- ① 전형명(대분류)은 지정(지정된 전형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 ② 모집시기별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
- ③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전형명(중분류)】, **【전형명(소분류)】**

- ① 일반학생 / 취업자 / 산업대학특별전형우선선발 농어촌학생(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 특성화고졸업자(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 서해 5도 학생(정원 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산업체위탁학생(정원 외,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 계약학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 기타는 전형명을 지정(전형명칭 변경하지 않음)

※ 정원 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개별 특별법에 근거

- ② 사이버대학의 경우, 일반학생 / 특별전형(정원 내) / 산업체·군위탁생(정원 외) /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 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 외) 등은 전형명을 지정(전형명칭 변경하지 않음)
- ③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유형: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이 다른 각각의 특기분야 및 세부전형으로 구분하여 아래로 서식을 늘려서 활용하며, 모집인원은 특기분야 및 세부유형별로 구분 작성
- ④ 특기자 특별전형은 특기분야별 구분(어학 / 체육 / 컴퓨터 등)
- ⑤ 대학독자적기준특별전형은 각 기준별 전형 구분(학생부교과우수자 / 학생부종합우수자 / 사회배려대상자(사회기여·봉사 등) / 추천자 등

【수시】 : 수시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미등록 충원 마감일 기준)

【정시】 : 정시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미등록 충원 마감일 기준)

【최종】 : 최종 모집인원, 등록인원 및 등록률(당해연도 학기개시일 전일 기준)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인원(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 학칙이 정하는 학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름

- ① 총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입학정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20% 이내)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 특성화고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총 입학정원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 11% 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

원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② 총모집인원 (사이버대학)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 입학정원 + 위탁생(총 입학정원 20% 이내)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총 입학정원 2% 이내) + 기회균형선발(총 입학정원 9% 이내) + 장애인 등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제7호) 등

③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 외)은 총 입학정원의 4% 이내,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정원 외)은 총 입학정원의 1.5%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은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서해 5도 학생(정원 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참고: 사전예고 시의 모집인원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의 실제 모집인원은(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포함) 추후 해당 모집시기 전에 공고되는 모집요강에서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확정 변경됨

※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의 경우, 해당 전형의 등록인원 수대로 모집인원을 입력

※ 최종 모집인원은 당초 계획(시행계획)된 인원 입력(수시, 정시, 추가 모집인원의 합이 아님)

【등록인원】 : 2023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로 선발된 인원 중 등록을 완료한 인원수

※ 제외: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사이버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외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계약학과는 재교육형/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인원 모두를 기재해야 함

【등록률(%)】 : (등록인원/모집인원) × 100

※ 모집시기별 등록률은 동점자 발생 여부에 따라 100%를 초과 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